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8일, 문정복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7.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1차 교육위원회(2025.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정복 의원)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67억 9,600만원~1,455억 7,000만원(연평균 73억 5,900만원~291억 1,4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므로, 소요재원 마련방안에 대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태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